위임전결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「사전청약 추정분양가격 검증 TF」운영('21.9.3~12.31)에 따른 업무별 전결권을 위임전결규정에 반영

2. 주요 개정 내용

「사전청약 추정분양가격 검증 TF」운영('21.9.3~12.31)에 따른 전결권 신설(금융심사처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○ 주소 :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BIFC 18층, 기획조정실

○ 담당자(이메일) : 배재영(jybae@khug.or.kr)

○ 전화번호 : (051)955-5315

○ 팩스번호 : (051)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TF 신설과 연계하여 업무별 권한·책임 명확화를 위해 조속한 규정 개정 필요

별첨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.

[별지]

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[별표](제3조 관련) 위임전결기준표	[별표](제3조 관련) 위임전결기준표 * 개정내용 붙임 참조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	TF 신설에 따른 전결권 반영

[붙임]

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(제3조 별표 관련)

현 행

□ 금융심사처

업무내용	영업부서		본사부서				비고
	팀장	부서장 (출장소장)	팀장	부서장	본부장	사장	
1.~6. (생략)							
<신 설>							
7. (생략)							

개 정 안

□ 금융심사처

업무내용	영업부서		본사부서				비고
	팀장	부서장 (출장소장)	팀장	부서장	본부장	사장	
1.~6. (현행과 같음)							
7.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검증							
가. 추정분양가 검증체계 구축							
(1) 중요사항					○		
(2) 일반사항				○			
나. 추정분양가 검증 운영							
(1) 중요사항					○		
(2) 일반사항				○			
8. (현행 7호와 같음)							